

의안번호	2205210
의 퇴 인	정혜경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B47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의무규정
2	안 제8조(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회는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을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까지로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장복귀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1조의 19(노무제공자 에 대한 보험급 여 산정 특례) (삭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제1항)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제2항)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91조의 2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신고 의무업종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업종(이하 “신고의무업종”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업종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의무규정
8	안 제91조의 23(노무제공자 등의 피보험자 격의 확인)	사업주는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이 법률상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확인을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91조의 24(예술인등)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제3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문화예술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예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제1항) 1.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2.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의무규정
		예술인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보험급여의 지급·플랫폼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는 각각 “예술인등”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10	안 제123조의 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제1항)	의무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봄(제2항)	의무규정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3항)	의무규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제4항)	의무규정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적용 범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¹⁾ - 그러나 관련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가구 내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2	안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	• 미대상 -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의 시행으로 직장복귀지원금에 대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제2항)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재활운동비에 대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제4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4	안 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	—	• 미대상 － 현재 공단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6	안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7	안 제91조의2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신고 의무업종 지정)	—	• 미대상 －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91조의23(노무제공자 등의 피보험자격의 확인)	—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9	안 제91조의24(예술인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예술인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본문 참조
10	안 제123조의3(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본문 참조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세 사유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당연적용),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노무제공자²⁾, 현장실습생³⁾, 자활급여 수급자⁴⁾, 학생연구자⁵⁾ 등의 경우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됨
 - 중·소기업사업주⁶⁾ 및 가족종사자(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⁷⁾, 해외파견자 등 임의가입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할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안 제91조의15)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규정

2)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등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고교(일반계고, 직업계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 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수급자

5) 학생연구자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사람

6)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

7) 무급가족종사자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음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⁸⁾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⁹⁾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¹⁰⁾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¹¹⁾.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
- 8)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9)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0)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11)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¹²⁾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¹³⁾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말 기준 136만명이 이에 해당함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제공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6
노무제공자 수	657,296	764,116	806,801	1,193,801	1,357,908

주: 1. 2022~2022년은 매년 말 기준 입직자 기준

2. 2023년 7월 입이직 제도 폐지 및 월 보수액 신고 의무화에 따른 연도말 기준(2024년도는 6월 말 기준) 월 보수액 신고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무제공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규

12)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 (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3)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정된 방법¹⁴⁾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

□ (안 제91조의19)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52조)
 - 저소득 일반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제54조제1항),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제54조제2항) 일반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됨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2024년 현재 기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41,150원으로¹⁵⁾ 최저임금 수준(2024년 기준 78,880원) 보다 낮음
- 따라서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 이므로, 휴업급여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안 제91조의24 및 제123조의3) 예술인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재보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14)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 (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28호

- 첫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¹⁶⁾
 - 그러나 예술인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예술인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